

보건복지분야 법률 제정 및 개정(안)

김창순

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

보건복지부는 1996년도 정기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,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,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, 노인복지법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. 국회에 제출예정인 이 5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사유, 그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의료분쟁조정법 제정(안)

□ 제정 사유

-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.

□ 주요 내용

- 분쟁조정 대상
 - 의료행위, 헌혈·수혈 또는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에 관한 다툼
- 분쟁조정기구
 - 보건복지부와 시·도에 각각 「의료분쟁조정위원회」를 설치하되 조정의 공정성을 확

-
- 보호기 위하여 공익대표자, 의료인 및 소비자 대표로 위원회 구성
- 다만, 의료분쟁의 조정이 준 사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는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.
 - 조정전치주의제도 도입
 - 의료분쟁에 관한 소는 이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, 조정을 신청한 후 90일이 경과된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.
 - ※ 조정기간은 60일,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
 - 조정의 효력
 -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함.
 -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동의가 없이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조정의 효력을 상실함.
 -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
 - 의사, 치과 의사 및 한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「의료배상공제조합」을 설립하여 의사 등의 책임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함.
 - ※ 미가입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 - 진료방해 등 금지
 - 의료분쟁시 피해자측이 의료시설 등을 파괴·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둠.
 - 다만, 그 처벌에 관하여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형법상 여러 가지 죄(예를 들어 공용물 파괴, 업무방해, 주거침입, 재물손괴, 공무집행방해 등)를 구성하여 형량이 다를 수 있도록 함.
 -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
 - 의사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사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(업무상 과실치사상)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
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(안)

□ 제정 사유

- 장애인, 노약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〈총칙〉

- 현제도 건축법, 주차장법 등에서 일부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을 제정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·노약자 등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토록 함.

〈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〉

-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범위 규정
 - 도로,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 이동과 접근에서의 편의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에도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버스, 택시, 지하철, 철도 등 교통수단도 포함함.
- 유지·관리의무 부과
 -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 외에 설치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적절한 곳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함.
- 국가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세제·금융상의 혜택,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.
- 각 행정기관에 지도·감독 의무를 부과
 -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지도·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설치의 실질성을 기하고자 함.
 -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함.
 -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별로 편의시설에

대하여 지도·감독함.

- 건설교통부: 철도 등
- 정보통신부: 공중전화 등
- 시·도지사: 버스, 택시 등
- 시·군·구청장: 건축물 등

-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
 - 관할 행정기관은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함.
- 기준의 완화
 - 구조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〈보장구 및 인간존중물품〉

- 보장구산업의 육성
 - 휠체어, 의수족, 보청기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인 보장구는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데 국내 보장구산업이 낙후되어 값비싼 외국 보장구를 수입하고 있음.
 - 국가는 보장구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급 등의 조치와 보장구 연구 개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도록 함.
 - 보장구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, 기술지원, 자금융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※ 현재 국내 보장구업체는 136개소로서 대부분 영세업체임.
- 인간존중물품의 제조·판매 육성
 - 신체기능에 이상이 있어 정상인과 달리 물품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판을 부착한 전자레인지, 자막방송을 위한 디코더 등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인 인간존중물품을 제조·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함.
 - 이러한 제품에는 인간존중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.

〈편의시설관리원 설치〉

-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편의시설관리원 설립
 - 편의시설과 보장구 등에 관련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전문인력에 의한 연구와 기술지원이 필요함.
 - 편의시설의 연구개발과 기술지원, 보장구 등의 연구개발 사업, 기금의 관리·운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함.

〈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설치〉

- 편의시설설치를 활성화하고 보장구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
 - 기금은 정부출연금, 이행강제금,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함.
 - 정부는 매년 등록장애인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기금에 출연함(매년 약 40억원 이상 추산).

〈제재 및 기타 규정〉

- 이행강제금
 - 시설주가 이 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정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.
- 벌칙
 -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 - 유지·관리업무 미이행시, 그리고 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차량 주차시 구두경고후 강한 벌금에 처함.
-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편의시설 중 특별히 정하는 것은 일정기간까지 정비
 - 대상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공공기관의 청사 등과 장애인의 이용이 특히 많은 장애인시설 등은 기존 시설까지 정비토록 함.
 -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화장실 등을 기존시설까지 정비토록 함.
- 보장구 제조·수리업체에 대한 허가제 폐지
 - 보장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한적 요소를 철폐함.

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(안)

□ 제정 사유

-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관리해오던 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·배분·관리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공동모금기구로 중앙공동모금회와 시·도지역 공동모금회를 설치
- 공동모금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
- 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으며, 공동모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함.
- 공동모금회의 관리운영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.
-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복지사업기금 중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중앙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함.

국민건강증진법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-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공익사업부담금의 부과가 1996년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담배사업자의 공익사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관계 규정을 담배를 제조·판매하는 담배사업자 등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개정하는 등 법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보건복지

부령이 정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제4항 단서).

- 담배를 제조·판매하는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, 동 기금조성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신설하여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 2, 제23조).
-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민간의 참여를 도모함(안 제29조).

노인복지법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-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점차 증가하는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, 노인에 대한 보건예방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보건·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노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규정 마련
- 현재 법인으로 제한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개인, 기업까지 확대
-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
- 노인전문병원과 치매·중풍 등 특수질환 노인을 위한 「노인전문요양시설제도」 도입
- 부양의무 자녀에 대한 「구상권제도」 신설
-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「노인취업알선센터」를 설치·지원
-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,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